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이훈기 · 황운하 · 김우영
박지혜 · 민병덕 · 김남근
양부남 · 모경중 · 강준현
김형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.6%에 불과하고,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.7%로 저조하게 나타나며,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 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지원
2.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 개발 지원
3.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지원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지원

제47조의7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중소기업

제1조(시행일)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 보 등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(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 보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</u> <u>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</u> <u>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</u> <u>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</u> <u>소기업”이라 한다)으로서 제1</u> <u>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</u> <u>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자체 보안체계 구축 비용 지</u> <u>원</u> <u>2.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기술</u> <u>개발 지원</u> <u>3.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</u> <u>육 지원</u> 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</u> <u>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</u> <u>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</u>

제47조의7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7조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. (생략) ②·③ (생략)	<u>지원</u> 제47조의7(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중소기업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